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832
------	------

2020. 11. 25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8월 12일, 채인묵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】

-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11.25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채인묵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2020년 7월,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- 또한 상품권 사용 저변 확대로 일부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, 부정사용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등 서울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, 종류, 권면금액 및 할인판매 범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4조 및 안 제8조 제4항).
- 나. 운영대행사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으며, 등록 취소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 제1항·제4항).
- 다. 가맹점에서 복권 및 다른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, 서울사랑상품권 수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제1항 다목 신설).
- 라. 상품권 유통현황 관리를 위해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에 판매량·재고량·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 제3항).
- 마. 가맹점 및 사용자가 조례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3조 신설).
- 바. 법 제20조에 따라 가맹점 등이 법 위반행위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14조 신설)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의 제정·시행(2020.7.2.)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상품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현황

- 2020년부터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(이하 “상품권”)은 25개 자치구 별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며, 월 70만원 한도까지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음.
- 코로나19로 인한 골목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대폭적인 할인<sup>2)</sup>을 실시한 결과,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여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현재 까지 총 5,270억원의 상품권이 발행·판매되었음.
  - 상품권의 기본할인율은 7%(서울시 5%, 자치구 2%)로 설계되었으며, 추가 할인의 경우 초기 특별할인은 서울시가, 이후 발행부터는 자치구 자체예산을 통해 보전하였음.

1)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정·시행(2019.12.31.)으로 도입

2) 최대 20% (15% 할인, 5% 캐시백)

## < 서울사랑상품권 예산 및 발행규모 >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제4회 추경예산	제3회 추경예산	제2회 추경예산	2020년 본예산
2020년 예산 (증감)	38,710 (+6,650)	32,060 (+13,460)	18,600 (+5,000)	13,600
상품권 발행규모	108,500	179,000	39,500	200,000

### 다.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 정비

#### (1)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제1호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정의를 현행 ‘유가증권’에서 유가증권, 선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카드까지로 확대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1. “서울사랑상품권”(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이란 -----,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<u>유가증권</u> 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가증권</u> 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<u>선불전자지급수단</u>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<u>선불카드</u> 를 말한다.

- 이는 법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의를 따른 것으로,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, 모바일, 지류 상품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음.
- 현행 조례는 상품권의 유형을 유가증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,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서울시의 현실과도 상충되는 바,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됨.

- 같은 조 제4호는 법에서 가맹점을 분리 정의함에 따라 ▶상품권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‘개별가맹점’ 과 ▶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‘환전대행가맹점’ 으로 분류하였음.

## (2)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안 제4조제2항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법과 동일하게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4조제4항은 법에서 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, 상품권의 종류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, 권면금액을 1만원, 5만원, 10만원권 3종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28개로, 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(모바일)로만 발행하는 곳은 서울(25개 자치구)을 비롯해 33개에 불과하고, 대부분 선불카드나 지류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혼용하고 있음.

### <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(2020.9.기준) >

구분	광역 자치 단체	기초자치단체						
		합계	카드	카드+지류 카드+모바일	모 바일	모바일+ 지류	지류	카드+지류 +모바일
서울	-	25	-	-	25	-	-	-
부산	카드	16	16	-	-	-	-	-
인천	카드	10	10	-	-	-	-	-

구분	광역 자치 단체	기초자치단체							
		합계	카드	카드+지류 카드+모바일	모 바일	모바일+ 지류	지류	카드+지류 +모바일	
광주	카드	5	5	-	-	-	-	-	
대전	카드	5	5	-	-	-	-	-	
울산	모바일	5	-	-	5	-	-	-	
대구	카드	8	8	-	-	-	-	-	
세종	카드	-	-	-	-	-	-	-	
경기	-	31	수원, 고양, 용인, 부천, 화성, 남양주, 파주, 의정부, 광주, 광명, 군포, 하남, 오산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연천	안산, 안양, 평택, 포천, 의왕, 가평, 과천+김포 (카+모)	-	시흥	-	성남	
강원	모바일, 지류	14	강릉, 영월, 동해	태백, 인제	-	춘천	원주, 삼척, 정선, 철원, 화천, 양구, 고성, 홍천	-	
충북	-	11	청주, 음성	옥천	-	제천, 진천	충주, 보은, 영동, 증평, 괴산, 단양	-	
충남	-	15	천안, 부여	-	공주	아산, 서산, 계룡, 서천	보령, 논산, 당진, 금산, 청양, 홍성, 예산, 태안	-	
전북	-	13	익산	무주, 고창	-	군산, 정읍, 남원	김제, 완주, 진안, 장수, 임실, 순창, 부안	-	
전남	-	22	광양	영광	-	담양, 곡성, 강진	목포, 여수, 순천, 나주, 구례, 고흥, 보성, 화순, 장흥, 해남, 영암, 무안, 함평, 장성, 완도, 진도, 신안	-	
경북	-	22	경산, 경주, 울진	의성, 칠곡, 상주	-	영주, 고령	포항, 안동, 구미, 영천, 문경, 군위, 청송, 영양, 영덕, 성주, 예천, 봉화	김천, 청도	
경남	모바일	17	양산	김해 (카+모)	-	창원, 밀양, 거제 고성, 남해, 하동 산청, 함양, 합천	진주, 통영, 의령, 함안, 창녕, 거창	-	
제주		-	-	-	-	-	-	-	
합계		9	219	78	18	31	25	64	3

※자료 :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쟁점(이슈와논점 1760호-2020.10.05., 국회입법조사처)

- 따라서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확대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의 발행 형태를 모바일로만 고정할 것이 아니라, 카드나 지류로 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.

(3) 가맹점 · 운영대행사 · 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· 제8조)

- 안 제5조제1항은 가맹점의 등록 시 운영대행사를 통한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안 제8조제1항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 가맹점 등록을 포함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  - 현행 조례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이나 위탁 가능함.
- 이는 현재 제로페이와 연계되어 상품권이 운영됨에 따라 상품권과 제로페이의 가맹신청이 동일한 바, 운영대행사에서 상품권의 가맹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, 법 제18조에 따라 상품권 업무의 일부만이 위탁가능해 범위를 수정한 것임.
- 다만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에 “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”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, 이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법 제7조제2항	조례안 제5조제2항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 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	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 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

법 제7조제2항	조례안 제5조제2항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	2. 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
3.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	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
	4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안 제5조제4항은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품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임.
- 이밖에 안 제8조제3항은 법 조문과 동일하게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게 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구체화하고 있어, 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.

#### (4) 환급비율, 할인, 과태료 부과 등(안 제8조제4항·제9조·제14조)

- 안 제8조제4항은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환급에 대한 사항으로, 권면금액의 60~80%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구매하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잔액의 환급비율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, 시행령에서 다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<sup>3)</sup>으로, 개정안에서 이를 다시 시장에게로 위임



하고 있는 바,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- 「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<sup>4)</sup>는 잔액환급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「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」<sup>5)</sup>은 100분의 60(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)으로 잔액 환급비율을 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시 할인율을 10%의 범위로 한정하고, 재난발생·경기침체·대량실업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상반기 실시한 코로나19 특별할인과 같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이밖에 안 제14조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, 환전대행가맹점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, 부과기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, 시장의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명시하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--

3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) 법 제1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.

4) 「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가맹점 준수사항)

3. 시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

5) 「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」 제8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(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)의 100분의 60(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)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개정안	수정의견
제14조(과태료 부과)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	제14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 라.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 및 환수조치 (안 제6조·제13조)

- 안 제6조는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구분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했으며, 개별가맹점의 금지행위에 상품권을 통해 복권이나 타 상품권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음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<u>가맹점</u>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</li> <li>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<u>판매 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</li> <li>나.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</li> </ol> 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<u>개별가맹점</u>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</li> <li>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<u>환전 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</li> <li>나.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</li> </ol> </li> </ol> <p><u>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</u></p> <p>② <u>환전대행가맹점</u>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</li> <li>2.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</li> </ol>

- 이는 상품권으로 복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부정유통행위 (일명 “깡”)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13조는 가맹점과 사용자가 조례에 명시된 준수사항(안 제6조·제7조)을 위반할 경우,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현행 조례에서는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, 시장이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(제5조제3항제3호).
- 다만 환수조치는 서울시 지원금의 범위에서 가능한 바, 지원한 할인보전금은 상품권 금액의 단 5%에 불과해 상품권의 부당 사용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## V. 수정안요지

##### 가. 수정이유

- 법령 미반영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, 잔액환급비율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.

## 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가맹점 등록 거부 요건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를 추가함(안 제5조 제2항제4호 신설).
-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, 환급 시 할인지원금 제외,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 환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4항).
- 시장의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4조).

## 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## 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# 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3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5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법령 미반영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, 잔액환급비율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맹점 등록 거부 요건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를 추가함(안 제5조 제2항제4호 신설).
-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, 환급 시 할인지원금 제외,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 환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4항).
- 시장의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4조).

#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,” 를 “ 및 ” 으로 한다.

안 제3조 제목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 를 “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” 로 하고, 본문 중 “다른 조례” 를 “다른 법령이나 조례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법” 을 “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” 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같은 조제4항” 을 “같은 조 제4항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가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(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)

한다).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 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 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 목상권의 활성화, 소상공 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 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 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 상품권----- -----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 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 상품권----- -----.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<u>다른 조례</u> 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(현행과 같음)	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 의 관계) 상품권의 이용 활 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는 <u>다른 법령이나 조례</u> 에 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생 략)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 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 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	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개 정안과 같음)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조제 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

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③ <u>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일원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<u>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</u>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<u>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	<p>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<u>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-----</u> ----- <u>제출하여야 하며,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같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제3호 및 <u>같은 조 제4항에 따라</u>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	<p>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제3호 및 <u>같은 조 제4항에 따라</u>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1.~3. (생 략)</p> <p>4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등)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·충전·환전(이하 “발행등”이라 한다) 등 업무</p>	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판매·충전·</p> <p>환전, 가맹점 등록-----</p> <p>----- 업무</p>	<p>1.~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</p> 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~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 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의 일부----- -----.</p> <p>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과태료 부과)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</p>	<p>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(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).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p><u>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<u>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사랑상품권”을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유가증권을”을 “유가증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가맹점”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
(이하 “개별가맹점”이라 한다)

나.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(이하 “환전대행가맹점”이라 한다)

제3조 제목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 를 “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” 로 하고, 본문 중 “다른 조례” 를 “다른 법령이나 조례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 를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통지역은” 을 “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
  2. 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희망하는 자는” 을 “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” 로, “제출하여야 한다.” 는 “제출하여야 하며,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” 로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
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

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

나.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

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

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2.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
제8조의 제목 “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등)” 을 “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” 로, “판매·충전·환전” 을 “판매·충전·환전, 가맹점 등록” 으로 하며, 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” 를 “업무의 일부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” 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발행등의 업무실적” 을 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(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).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” 로, “할인판매” 를 “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” 로 하며,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제13조(환수 조치)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제14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



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.



현 행	개 정 안
<p>4. “가맹점”이란 <u>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4. “가맹점”이란 <u>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가. <u>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(이하 “개별가맹점”이라 한다)</u></p> <p>나. <u>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(이하 “환전대행가맹점”이라 한다)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<u>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상품권의 유효기간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<u>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일원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③ <u>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<u>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<u>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<u>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<u>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제출하여야 하며,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<u>가맹점</u>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<u>판매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</u></p> <p>가. · 나. (생 략)</p>	<p>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<u>개별가맹점</u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<u>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</u></p> <p>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등)</p> <p>① <u>시장</u>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 보수 또는 상품권의 <u>판매·충전·환전</u> (이하 “<u>발행등</u>” 이라 한다) 등 <u>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시장</u>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<u>발행등의 업무실적</u>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<u>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</u></p> <p>2.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 <u>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</u></p> 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 ① <u>시장</u>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<u>판매·충전·환전, 가맹점 등록</u>-----<u>업무의 일부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장</u>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<u>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</u>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.</p> <p>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<u>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(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).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업 및 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시장은</u> 상품권 사용자에게 <u>할인판매</u>,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,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<u>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사업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----- --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, ----- . 다만, 재난발생, 경기 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환수 조치) <u>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u></li> </ol> <p>제14조(과태료) ① <u>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